

#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

2012. 6

## 주의사항

본 정책 안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17일 공포, '12년 8월 18일 시행, 법률 제11322호)」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안내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사업자의 시스템 및 서비스 현황과 법률 제·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 메일 : 118@kisa.or.kr
- 전화 : (일반상담) 국번 없이 118, (전문상담) 02-405-5250, 5251
- 홈페이지 : [www.i-privacy.kr](http://www.i-privacy.kr) ("주민번호 수집제한 안내" 메뉴 이용)  
[www.kcc.go.kr](http://www.kcc.go.kr) ("자료실" 메뉴 이용)

# 목차

## ▶ 1 편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

|                                 |   |
|---------------------------------|---|
| 제 1 장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추진 배경 ..... | 1 |
| 제 2 장 주민번호 사용 제한 관련 법률 개정 ..... | 2 |

## ▶ 2 편 주민번호 사용 제한 주요 이슈 설명

|   |    |
|---|----|
| 제 1 장 법률 의무 이행 .....                          | 9  |
| 제 1 절 청소년 셋다운제 .....                          | 9  |
| 제 2 절 제한적 본인확인제 .....                         | 12 |
| 제 3 절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           | 14 |
| 제 2 장 실명확인서비스의 사용 .....                       | 16 |
| 제 3 장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연계정보(CI)·중복가입정보(DI) 사용 .. | 17 |
| 제 4 장 오프라인과의 연계 .....                         | 19 |
| 제 5 장 금융기관과의 연계 .....                         | 20 |

## ▶ 3 편 주민번호 사용 제한 주요 상담사례

|   |    |
|---|----|
| 제 1 장 주민번호 전환계획 개요 .....                | 29 |
| 제 2 장 주민번호 전환계획 수립 .....                | 32 |
| 제 3 장 주민번호 활용 서비스 .....                 | 39 |
| 제 1 절 청소년 셋다운제 등 연령 확인 .....            | 39 |
| 제 2 절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 게시판 본인확인방법 .....     | 43 |
| 제 3 절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                 | 45 |
| 제 4 절 제휴사업자간 주민번호 사용 .....              | 47 |
| 제 5 절 이용자 식별을 위한 주민번호 사용 .....          | 49 |
| 제 6 절 오프라인 연계 시 주민번호 활용 .....           | 51 |
| 제 7 절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료연체자 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 | 52 |
| 제 8 절 기타 주민번호 수집·제공 .....               | 55 |
| 제 4 장 대체수단 도입 .....                     | 59 |



1편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

제1장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추진 배경  
제2장 주민번호 사용 제한 관련 법률 개정



## 제 1 장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추진 배경

행정목적으로 발급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는 개인 식별의 편의성으로 인해 공공·민간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180만개 이상의 국내 웹사이트 중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사이트는 약 32만개(27%)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요 글로벌 웹사이트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어 국내 웹사이트의 광범위한 주민번호 수집·활용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사업자의 부주의와 해킹 등으로 인한 국내 웹사이트에서의 주민번호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주민번호 유출·오남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정책적으로 제한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한편,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을 돕고 관련 문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사업자 및 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정책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 제 2 장 주민번호 사용 제한 관련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까지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을 목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이다. 그 중,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된 제23조의2의 주요 개정내용은 [표1-1]과 같으며, 기존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정된 내용이 비교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개정 전과 후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개정 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1)본인확인기관, 2)법령에서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경우는 “주민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기준 대신에 “제23조의2”제2항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앞서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주민번호 이외의 본인확인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주민번호 유·노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주민번호의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사업자 역시 주민번호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훼손, 배상, 사회적 책임 등의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불필요한 자원낭비 예방 등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표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비교

| 법률 | 제23조의 2 (주민번호의 사용제한)   |  |
|----|--|--|
|    | 기 존  | 개 정  |
|    | <p>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p> | <p>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li> <li>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li> <li>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li> </ol> |
|    |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p>   |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p>   |

결론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민번호 사용방법에 영향을 받는다.

인터넷을 통한 주민번호 사용의 경우, [표 1-2]와 같이 법률에서 주민번호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입력 페이지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일괄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번호를 필요로 하는 목적 내에서 해당 시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결제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최초 회원가입 단계부터 주민번호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제가 이루어질 때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에 전달되는 절차상에서만 사용하고 동일 목적으로만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표 1-2]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명시한 법률

| 근거 법령          |                         | 내용  |
|----------------|-------------------------|---|
| 금융실명<br>거래법    | 법 제3조,<br>시행령 제3조       | 금융거래 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실지명의 확인<br>※ 실지명의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
| 부가<br>가치<br>세법 | 법 제16조,<br>시행령 제53조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br>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번호 기재<br>※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
|                | 법 제17조의2,<br>시행령 제63조의2 |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br>서에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주민번호 기재                               |
|                | 법 제33조,<br>시행령 제84조     | 납세관리인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납세관리인 선정<br>신고서에 납세관리인(부가통신사업자)의 주민번호 기재                             |
| 소득<br>세법       | 법 제145조,<br>시행령 제 193조  |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br>발급해야 하며, 영수증에 주민번호 기재                                     |
|                | 법 제164조,<br>시행령 제 213조  |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시,<br>기타소득자의 주민번호 기재   |
| 신용정보<br>보호법    | 법 제34조,<br>시행령 제29조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br>얻은 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가능                                   |
| 전자서명법          | 법 제15조,<br>시행규칙 제3조의2   | 공인인증서 발급 시 발급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br>신원확인   |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번호의 사용이 가능하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12.4.20, 국가정책조정위)에 따라 향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한될 예정이다. 대면 확인을 통한 주민등록증 확인이나 주민번호를 기재 또는, 육성으로 전달하는 행위 등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이에 해당하며 온라인과 연계되는 경우는 2편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전화를 통한 주민번호 사용의 경우, 고객센터에서 상담·문의·불만접수 등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상담의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활용한 본인확인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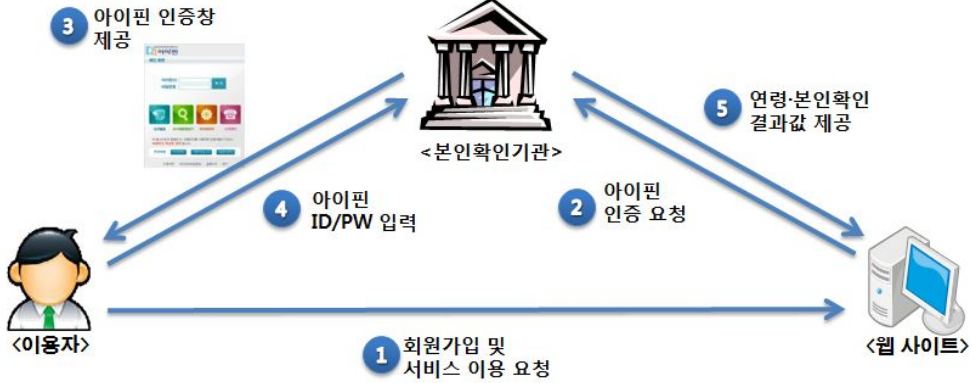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12.4.20, 국가정책조정위)에 따라 향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한될 예정이다.

팩스를 통한 주민번호 사용의 경우, 주민번호를 직접 수집하기보다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팩스를 통한 문서의 형태로 본인확인을 제공하는 경우(고객센터 등), 본인확인 후 즉시 파기하거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저장하도록 한다.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연령확인이나 본인확인, 성인인증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대신에 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시에도 현재의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에서 생년월일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본인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확인 수단(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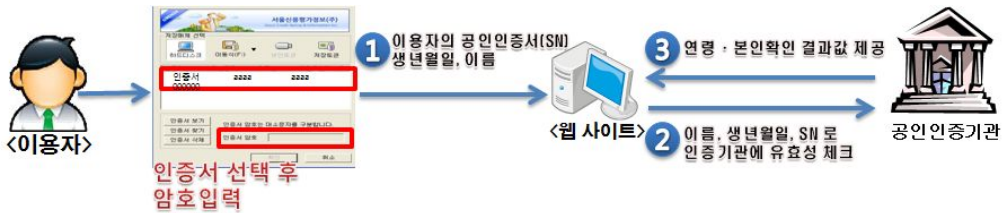
[ 아이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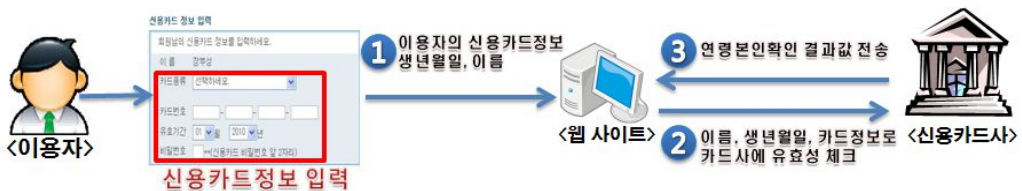
[ 휴대폰 인증 ]



[ 공인인증서 인증 ]



[ 신용카드 인증 ]



2편

## 주민번호 사용 제한 주요 이슈 설명

- 제1장 법률 의무 이행
- 제2장 실명확인서비스의 사용
- 제3장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연계정보(CI·중복가입정보(MI) 사용
- 제4장 오프라인과의 연계
- 제5장 금융기관과의 연계



## 제 1 장 법률 의무 이행

### 제 1 절 청소년 셧다운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87만 명(청소년 인구의 약 12.4%)이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수면부족, 사회적 일탈 등의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11년 5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셧다운제를 도입하였다.

청소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서비스 제공자는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이용을 중단시키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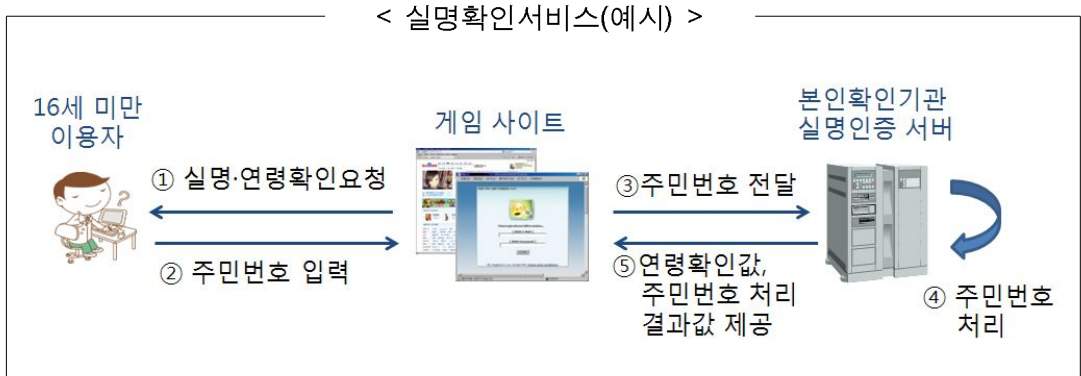
#### < 관련 법률 >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 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인터넷게임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과 같은 법규 이행을 위해 실명·연령확인 및 본인을 인증하도록 하여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2년 8월 18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인터넷게임서비스 제공자 또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동시에, 기존의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조치 해야 하므로, 주민번호를 사용한 실명·연령확인 및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후부터 청소년 셋다운제, 게임 중독 예방조치 등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대체수단으로 이를 대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는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인터넷게임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2년 이내 파기하되, 기존 회원의 연령정보를 보존하여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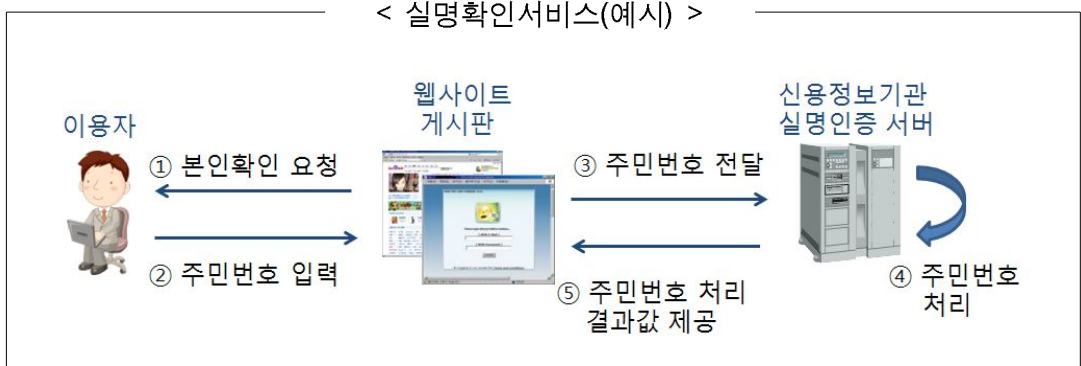
< 관련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 2 절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명예훼손 및 사이버 폭력 등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의 개정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되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정보를 게시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1회에 한하여 본인을 확인하게 되며, 본인확인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ID나 별명 등을 통한 게시판 이용이 가능하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본인 및 실명확인에 활용하고 있다.



### <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4(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주민번호를 활용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법규준수를 위해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이핀,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수단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체수단으로써 현재 제공되는 아이핀 외에도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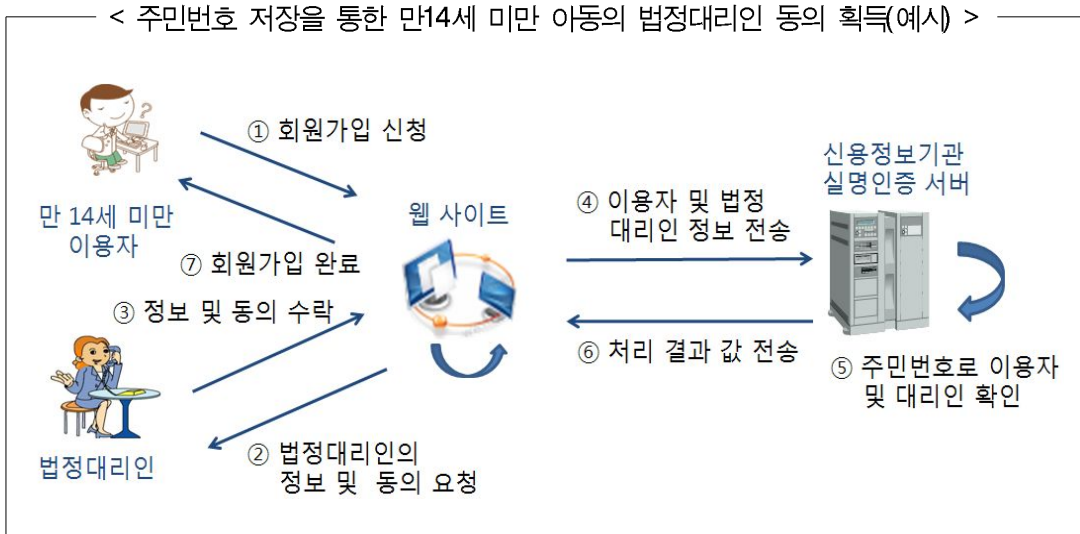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 제 3 절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게임 과다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게임사업자는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따라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규의 준수를 위해 게임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뿐만 아니라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해야한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게임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청소년 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절차를 분리하고, 회원가입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고 있다.



<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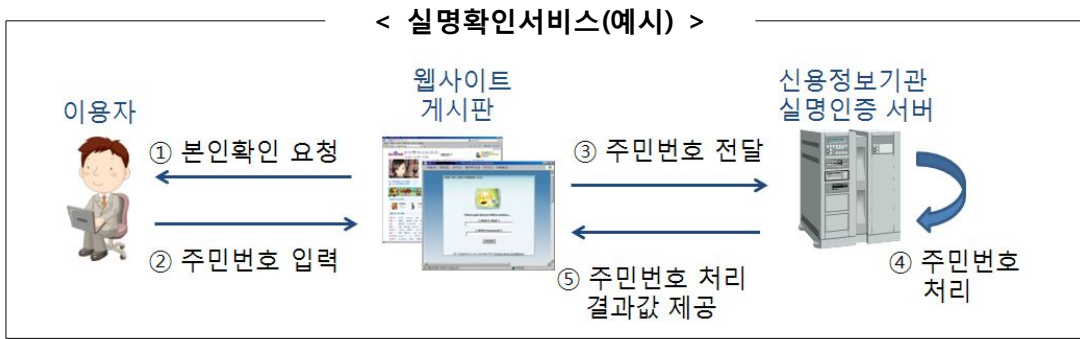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게임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이용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 시 주민번호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대체수단으로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생년월일을 입력 받은 후,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를 통하여 동의를 획득하면 된다. 이 때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로는 아이핀이 있으며, 이외에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한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제 2 장 실명확인서비스의 사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회원관리를 위해 일정 가입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 많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회원가입 시에 중복 가입 방지, 사업자 상권보호,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 인증 이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되므로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악의를 품은 사용자(블랙컨슈머)의 재가입으로 인한 상습적 부당행위, 인신공격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현재 주민번호를 이용한 아이디·패스워드 확인 서비스나 온라인 민원 처리 등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회원 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실명확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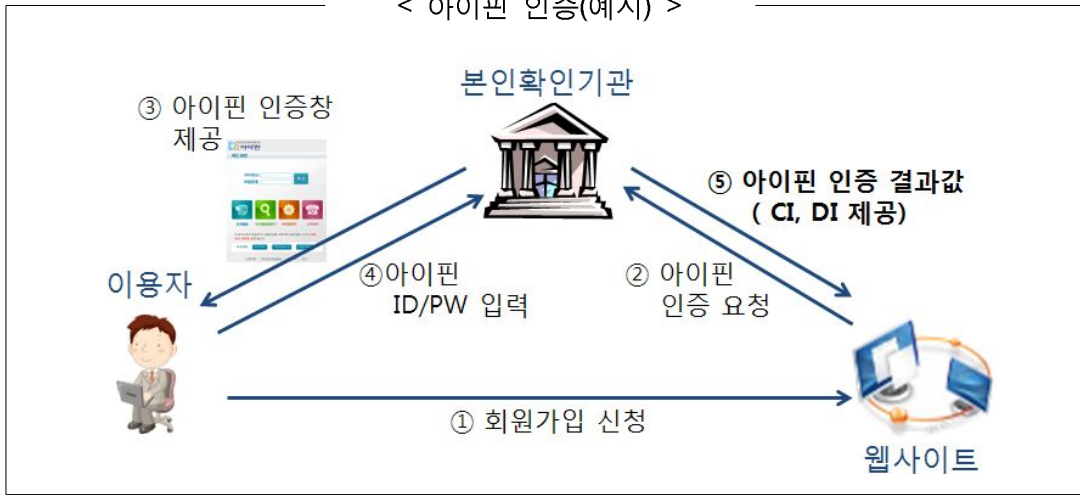
### 제 3 장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연계정보(CI) · 중복가입정보(DI) 사용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공유를 통한 사업자간의 제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과거에는 주민번호를 활용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주민번호를 외부 식별키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제휴 서비스의 외부 연계정보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자간의 제휴 서비스를 위하여 주민번호 대신 연계정보 또는 식별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존의 이용자가 아이핀을 발급할 경우 부여되는 연계정보(CI: Connection Information)와 중복가입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이다.

본래 CI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 본인확인기관간의 아이핀 발급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동일한 식별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사업자간 제휴 서비스 제공시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제휴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 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인증 결과 값으로 CI와 DI가 제공될 예정이다.

각 웹사이트 내부에서 이용자 식별을 위해 DI를 사용할 수 있다. DI는 웹사이트 내 이용자의 중복 계정 생성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CI와 달리 DI의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고유 번호가 생성절차 중에 입력되기 때문에 웹사이트 내부 회원식별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각 사업자 끼리 같은 이용자에 대해 각기 다른 DI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외부 연계서비스에는 사용이 어렵지만 내부 식별, 중복가입 방지의 용도로는 사용 가능하다.

< 아이핀 인증(예시)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연계정보(CI)의 본래 사용목적인 제휴·연계서비스 외에, 주민번호 없이 이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연계정보(C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이용자 식별정보로써 연계정보(CI) 사용이 허용될 경우, 관행적인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및 고유식별정보의 불필요한 사용을 막겠다는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와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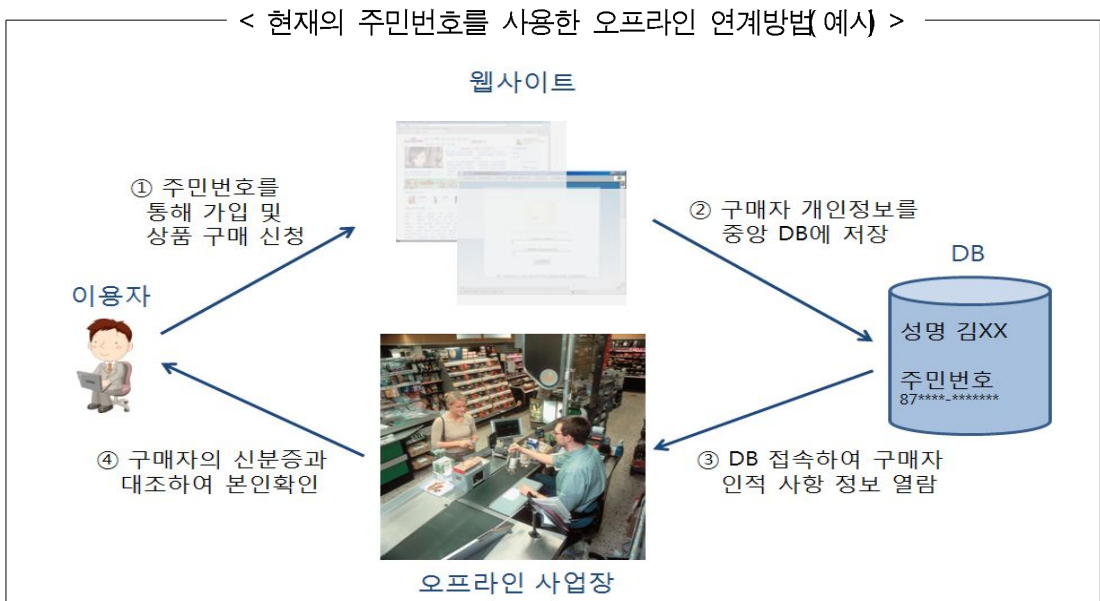
따라서 각 웹사이트별 중복가입방지 등 회원관리 및 이용자 식별은 중복가입정보(DI)를 활용하고, 연계정보(CI)는 외부 사업자간 연계 또는 제휴서비스 제공 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실명확인을 통해서는 연계정보(CI), 중복가입정보(DI)를 저장할 수 없으며, 아이핀 등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결과 값으로만 저장할 수 있다.



## 제 4 장 오프라인과의 연계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를 위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일반적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의 개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한 이용자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직접 정보조회·변경·탈퇴 등을 요구할 경우 주민번호를 육성으로 불러주거나, 신분증, 대면 확인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제휴할인을 위한 적립금 카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DB에 입력된 주민번호와 신분증을 대조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는 사업자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를 오프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프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향후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화를 위해 주민번호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12.4.20) 오프라인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사용도 제한될 예정이다.



## 제 5 장 금융기관과의 연계

전기통신을 통해 영상정보, 음성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금융결제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 수집한다. 예를 들어, 케이블TV와 같은 방송사업자는 설치기사가 고객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통신 서비스는 판매 대리점 등에서 직접 계약 할 때 주민번호를 수집한다. 그러나 향후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주민번호 관련 법률의 일제정비에 따라 향후 오프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사용 또한 제한될 예정이다.

### <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서비스인 자동이체, 카드결제와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금융기관에 주민번호를 제공해야만 해당 업무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용료 연체 발생 시, 연체 사실 통보 및 채권추심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데, 채권추심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이용자 주민번호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수집한 주민번호를 활용하여 채권추심 등의 미납 처리에 활용하고 있다.

< 관련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이러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법과 신용정보법 등과 같이 타 법률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금융기관 등과 연계할 경우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회원가입 당시부터 미리 주민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해당 시점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한 목적으로만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3편

주민번호 사용 제한  
주요 상담사례

- 제1장 주민번호 전환계획 개요
- 제2장 주민번호 전환계획 수립
- 제3장 주민번호 활용 서비스
- 제4장 대체수단 도입



## 상담사례 목차

|                          |    |
|--------------------------|----|
| 제 1 장 주민번호 전환계획 개요 ..... | 29 |
|--------------------------|----|

|                          |    |
|--------------------------|----|
| 제 2 장 주민번호 전환계획 수립 ..... | 32 |
|--------------------------|----|

|   |    |
|---|----|
| Q1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된다는데, 어떤 사항이 변경되는 건가요? .....  | 32 |
| Q2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33 |
| Q3 오프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도 제한되나요? .....   | 33 |
| Q4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33 |
| Q5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될 경우 어떤 법이 우선 적용 되나요? ..  | 34 |
| Q6 주민번호 중 생년월일은 사용 가능한가요? .....   | 34 |
| Q7 주민번호 뒷자리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35 |
| Q8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체수단(주민번호를 사용<br>하지 아니하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 35 |
| Q9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부족한데, 법률 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있나요? ..  | 35 |
| Q10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에도 실명확인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  | 36 |
| Q11 자체 웹사이트가 아닌 신용정보회사 등의 창을 통하여 실명확인 후, 결과 값<br>(CI 등)을 전송받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36 |
| Q1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br>해야 하나요? .....                               | 37 |
| Q13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창구가 있나요? .....   | 37 |
| Q1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37 |

|                         |    |
|-------------------------|----|
| 제 3 장 주민번호 활용 서비스 ..... | 39 |
|-------------------------|----|

|                              |    |
|------------------------------|----|
| 제 1 절 청소년 셋다운제 등 연령 확인 ..... | 39 |
|------------------------------|----|

|   |    |
|---|----|
| Q1 셋다운제, 성인인증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는<br>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39 |
| Q2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금지(00시~06시) 규정<br>준수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대신할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 | 40 |
| Q3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  | 40 |
| Q4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42 |

**제 2 절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 게시판 본인확인방법 ..... 43**

Q5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해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저장하는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3

**제 3 절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 45**

Q6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에 대한 증명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5

Q7 게임산업법에 따라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자 연령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6

**제 4 절 제휴사업자간 주민번호 사용 ..... 47**

Q8 포인트 통합 및 사용을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해줄 수 있나요? ... 47

Q9 신용카드와 제휴된 포인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7

Q10 제휴사업, 포인트 연계 등을 위해 외부 사업자간 연결이 필요할 때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연계정보가 있나요? ..... 48

**제 5 절 이용자 식별을 위한 주민번호 사용 ..... 49**

Q11 전자상거래에서 전자 결제 시 이용내역, 구매기록 조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9

Q12 인터넷이나 전화고객센터에서 고객의 본인확인 및 불량이용 고객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0

**제 6 절 오프라인 연계 시 주민번호 활용 ..... 51**

Q13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연계정보(CI)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51

Q14 온라인으로 시험 접수 후 오프라인 수험장에서의 본인확인 및 온라인 접수 내역 등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1

**제 7 절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료·연체자 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 52**

Q15 휴대전화의 개통, 변경, 조회, 해지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고 이때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2

Q16 통신사의 후불요금제의 경우 금융기관에 주민번호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3

Q17 방송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중이며, 요금청구 및 결제 시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3



- Q18 통신사업자의 경우 후불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미납금에 따른 채권발생 시 채권추심이나 소송을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53
- Q19 통화기록 조회 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이용자의 본인 확인방법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4

**제 8 절 기타 주민번호 수집·제공 ..... 55**

- Q20 기존에 수집한 회원들의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5
- Q21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5
- Q22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6
- Q23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7

**제 4 장 대체수단 도입 ..... 59**

- Q1 아이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59
- Q2 아이핀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59
- Q3 공인인증서는 무엇인가요? ..... 60
- Q4 휴대폰 인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도입하나요? ..... 61
- Q5 아이핀 도입 시 절차나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61
- Q6 연계정보(CI)는 무엇이고, 중복가입정보(DI)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61
- Q7 연계정보(CI)의 활용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62
- Q8 연계정보(CI)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 62
- Q9 게임, 쇼핑몰 등의 이용자 계정에 축적된 재산권(게임·사이버머니)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나 오프라인 등에서 강력한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62
- Q10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회원의 중복가입 방지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나요? ..... 63
- Q11 본인확인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63
- Q12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4
- Q13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란 어떠한 경우 인가요? .. 65



## 제 1 장 주민번호 전환계획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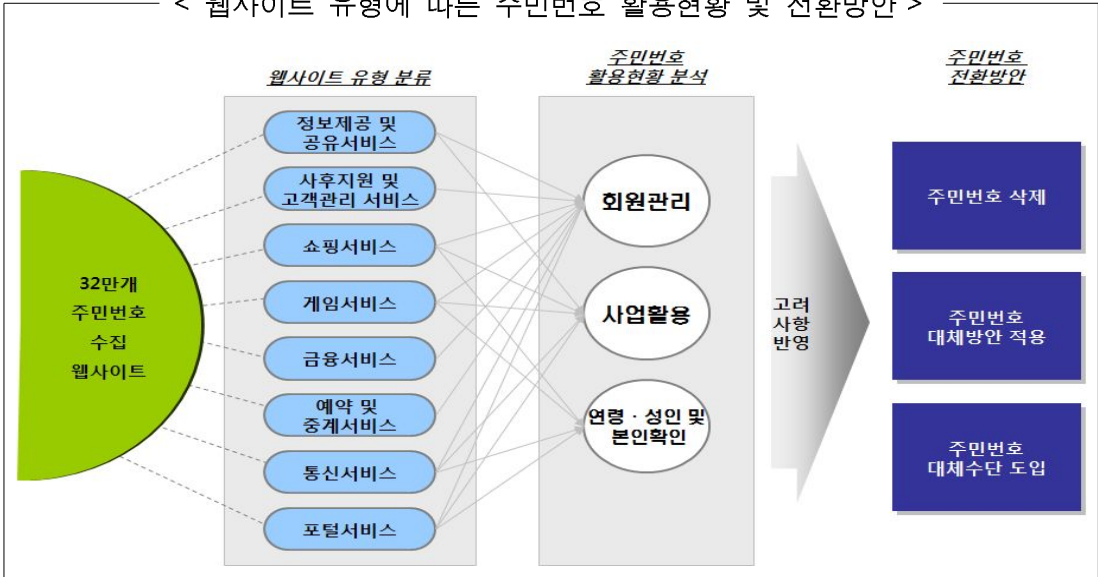
웹사이트는 서비스 목적에 따라 제공 정보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상품 및 기업소개,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제공형, 유형의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재화 제공형, 무형의 서비스나 오프라인 서비스의 연계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형, 그 밖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제공형 등 8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1] 서비스 목적별 웹사이트 유형

| 목적      | 웹사이트 유형           |
|---------|-------------------|
| 정보 제공형  | ① 정보제공 및 공유서비스    |
|         | ② 사후지원 및 고객관리 서비스 |
| 재화 제공형  | ③ 쇼핑서비스           |
| 서비스 제공형 | ④ 게임서비스           |
|         | ⑤ 금융서비스           |
|         | ⑥ 예약 및 중계서비스      |
|         | ⑦ 통신서비스           |
| 통합 제공형  | ⑧ 포털서비스           |

이처럼 웹사이트를 편의상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는 있으나 주민번호 수집 이용목적 을 분석한 결과, 웹사이트 유형과 주민번호 수집·이용 목적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개 주민번호는 ①이용자 확인 및 회원관리, ②수익사업 및 외부연계서비스에 활용, ③연령·성인 및 본인확인 의 3가지 목적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정책 안내서에서는 3가지 주요 형태에 대해 세부 사안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 웹사이트 유형에 따른 주민번호 활용현황 및 전환방안 >



전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사전준비단계(STEP 1)로서 각 사업자별로 내부에서 TFT를 조직하고 수집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후 주민번호 수집 목적과 활용현황 분석(STEP 2)을 통해 분석 결과와 법률검토, 시스템 구조 및 내·외부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전환방법에 대해 의사결정(STEP 3)을 한다. 이후 과정부터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선택한 전환방법을 통해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절차를 추진(STEP 4)하면 된다.

<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을 위한 준비 절차 >



이에 따라, 본 정책 안내서에서는 주민번호 전환 절차를 4단계로 나누고 사업자의 기존 문의사항 및 예상 질의를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자세한 상담 내용은 다음 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상담사례

- STEP1 사전준비 ⇒ 주민번호 전환계획 수립
- STEP2 현황분석 ⇒ 주민번호 활용 서비스
- STEP3 의사결정 ⇒ 주민번호 활용 서비스
- STEP4 주민번호 전환 ⇒ 대체방안 도입

## 제 2 장 주민번호 전환계획 수립

### Q1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된다는데, 어떤 사항이 변경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18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①본인확인기관, ②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 경우, ③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됩니다.
-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관련 조항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 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Q2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2012년 2월 17일)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법령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 조, 제45 조의2, 제45 조의3, 제46 조의3, 제47 조, 제47 조의2, 제47 조의3, 제47 조의5, 제52 조제3항제7 호, 제66 조 및 제76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Q3 오프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도 제한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한 오프라인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12.4.20)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된 이후 오프라인에서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 Q4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 따라서, 방송사업자를 포함하여 통신사업자, 포털 등 영리목적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모두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됩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Q5**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될 경우 어떤 법이 우선 적용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적용 받습니다.

< 관련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Q6** 주민번호 중 생년월일은 사용 가능한가요?

- 주민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은 주민번호의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시 국민이 공공기관에 선언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 열입니다.
- 따라서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를 이용한 숫자 열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Q7 주민번호 뒷자리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수집·이용하여 회원의 유일성과 식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체계를 활용하여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수집·이용이 제한됩니다.

**Q8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체수단(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아이핀이 있습니다.
- 향후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생년월일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의 타 인증수단도 활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부족한데, 법률 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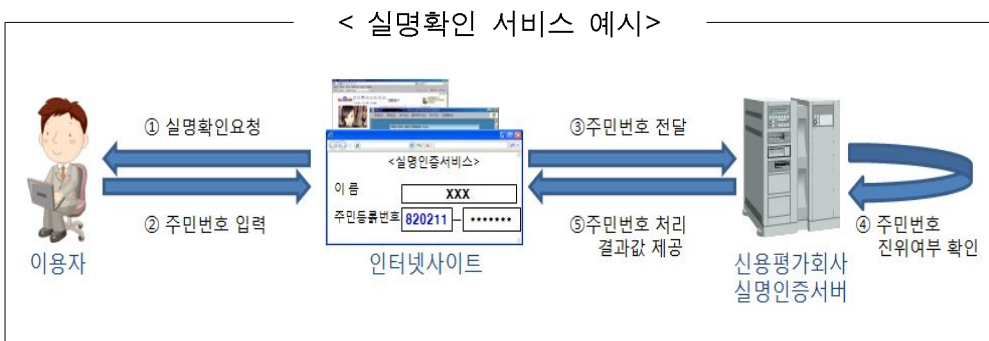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번호의 사용제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그러나, 대체수단의 도입을 위한 시스템 변경 등 사업자의 준비를 위한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2013년 2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5, 제52조제3항제7호, 제66조 및 제76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Q10**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에도 실명확인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12.8.18) 이후부터는 포털, 게임사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 시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면 실명확인 대신 대체수단 도입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11** 자체 웹사이트가 아닌 신용정보회사 등의 창을 통하여 실명확인 후, 결과 값(이 등)을 전송받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부터는 포털, 게임사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 시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실명확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실명확인의 결과 값으로 CI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아이핀, 공인인증서, 핸드폰 등)을 이용한 결과 값으로만 CI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1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은 법령에 의하여 필요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 규정은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Q13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창구가 있나요?**

-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마련된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에서는 법적 의무조치사항을 안내·상담하고, 관련 기술지원 및 대체수단(아이핀) 도입,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반 상담은 국번 없이 118, 전문 상담은 인터넷 홈페이지 i-privacy.kr(주민번호 수집제한 안내 페이지) 또는 전화 02-405-5250, 02-405-52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1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 3 장 주민번호 활용 서비스

### 제 1 절 청소년 셋다운제 등 연령 확인

#### Q1 셋다운제, 성인인증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는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미성년자 대상 법규의 준수를 위해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 시 아이핀 등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년월일을 사용한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관련 사례 >

##### 게임사 본인인증 사례(예시)

- 현재는 주민번호 입력을 통한 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로 실명확인을 대신하도록 변경

The image shows a transition in a self-authentication interface. On the left, a dark header reads '본인인증' (Self-authentication). Below it, a message states: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To complete self-authentication, you must enter you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 checkbox is checked, and the label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followed by two empty input boxes. An arrow points to the right, where the same '본인인증' header is shown. Below it, a section titled '본인인증' (Self-authentication) contains four icons: '휴대폰' (Mobile phone) with a selected radio button, '신분증' (ID card), '공인인증서' (Public certificate), and '신용카드' (Credit card). Below these icons, a message says: '고객님 명의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주세요' (Please enter your mobile phone number). There are three radio buttons for '통신사' (Carrier): SKT (selected), KT, and LG U+. Below that, there are input fields for '휴대폰번호' (Mobile phone number) with '010' in the first field and a dropdown for '인증번호받기' (Receive authentication number). At the bottom, there is a label '인증번호입력' (Enter authentication number) followed by an empty input box.

## Q2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금지(00시~06시) 규정 준수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대신할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따라 게임물 제공사업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0시부터 06시까지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이용자의 연령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게임물 제공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조항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Q3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 「청소년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이용자의 성인여부(만19세 이상)를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는 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신뢰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을 사용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관련 조항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판매금지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판매금지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것(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법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 관련 사례 >

**성인용품 웹사이트 성인인증 사례(예시)**

- 현재는 초기 화면에서 주민번호 입력을 통한 성인인증을 요구하고 있음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로 성인인증을 대신하도록 변경

**비회원 성인 인증**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회원 성인 인증**

아이디    
 비밀번호



인터넷주민번호대체수단  
**아이핀**  
 메인 화면

아이핀ID    
 비밀번호

#### Q4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이용자의 과몰입·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본인 확인 및 연령확인 시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신뢰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결과값을 제공받아 해당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을 사용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관련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 관련 사례 >

#### 게임사 본인인증 사례

- 현재는 주민번호 입력을 통한 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로 실명확인을 대신하도록 변경





## 제 2 절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 게시판 본인확인방법

### Q5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해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저장하는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게시판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게시판 이용 시 본인확인절차를 통한 인증결과값을 주민번호 대신 저장하여 해당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 아이핀을 통해 인증결과값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향후 생년월일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서도 같은 인증결과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 관련 사례 >

**포털사이트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사례**

- 현재는 포털 가입 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실명 확인' 동의를 받고 있음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수단(대체수단)으로 확인하도록 변경



### 제 3 절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 Q6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에 대한 증명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연령 정보를 받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본인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여 만 14세 미만의 연령정보를 받고 법정대리인의 동의획득 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인증결과값을 주민번호 대신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련 사례 >

**포털사이트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가입 사례**

- 현재는 주민번호 입력을 통한 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수단(대체수단)으로 확인하도록 변경



## Q7 게임산업법에 따라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자 연령확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 요청 시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제한을 위하여 이용자가 18세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연령확인 시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주민번호 대신 연령정보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핀을 통하여 인증결과값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향후 생년월일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서도 같은 인증결과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관련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 제 4 절 제휴사업자간 주민번호 사용

### Q8 포인트 통합 및 사용을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해줄 수 있나요?

- 포인트 통합 및 사용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포인트 통합 및 사용 시 본인확인수단을 통한 인증결과값(CI, DI)을 통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

#### 포인트 적립 서비스 제공 카드 등록 사례

- 현재는 주민번호 입력을 통한 실명확인 이후 카드등록을 요구하고 있음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수단(대체수단)으로 확인하도록 변경



### Q9 신용카드와 제휴된 포인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이용자의 구매에 따른 경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마일리지·포인트 등의 서비스 제공 시에는 신용정보의 활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회사와 포인트 연계 시에는 본인확인수단을 통한 인증결과값(CI, DI)을 통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

온라인쇼핑몰 카드포인트 결제 사례

- 현재는 제휴사로부터 결제자 정보(주민번호 포함)와 카드정보를 카드사에서 수신하여 제휴사로 전송하고 있음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수단(대체수단)으로 확인하도록 변경



**Q10** 제휴사업, 포인트 연계 등을 위해 외부 사업자간 연결이 필요할 때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연계정보가 있나요?

-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휴사업 포인트 연계 등 외부 사업자간 연결을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휴사업자와 연계 시에는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본인확인수단을 통한 인증결과값(CI, DI)을 활용해야 합니다.

## 제 5 절 이용자 식별을 위한 주민번호 사용

### Q11 전자상거래에서 전자 결제 시 이용내역, 구매기록 조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용자의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을 보존할 때 이와 관련된 거래 주체의 식별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거래기록 보존 시 거래주체 식별정보로 주민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에 따른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시 본인확인수단을 통하여 인증결과값을 저장하는 방안을 권고 드립니다.

#### < 관련 조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 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Q12 인터넷이나 전화고객센터에서 고객의 본인확인 및 불량이용 고객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본인확인 또는 사업자의 업무목적을 위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직접적으로 적용 받지 않습니다.
- 향후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12.4.20)에 따라 오프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 < 관련 사례 >

#### 전자제품 온라인고객센터 이용 사례

- 현재는 고객 문의 시 이름·이메일·연락처 정보를 수집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수단(대체수단)으로 확인하도록 변경

고객문의 CONTACT US

홈페이지 이용 및 기타 문의

|              |                      |
|--------------|----------------------|
| 이름           | <input type="text"/> |
| 이메일          | <input type="text"/> |
|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 <input type="text"/> |
| 제목           | <input type="text"/> |
| 내용           | <input type="text"/> |

신속한 전송을 위해 글자수를 한글 2000자 영문 4000자 이내로 제한하오니 고객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이핀

아이핀ID

비밀번호

확인

신규발급 ID/비밀번호찾기 아이핀관리 고객센터



## 제 6 절 오프라인 연계 시 주민번호 활용

**Q13**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연계정보(CI)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12.4.20)”에 따른 법률 정비 이후에 제한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온라인상에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연계정보(CI)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Q14** 온라인으로 시험 접수 후 오프라인 수험장에서의 본인확인 및 온라인 접수 내역 등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 자격/평가시험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험접수 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험장에서 이용자의 신분증과 접수 시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 조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관련 사례 >

#### 영어시험 전문사업자의 시험접수 사례

- 현재는 온라인으로 시험 접수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음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시행에 따라 성명·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 조합으로 확인하도록 변경



## 제 7 절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료·연체자 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 Q15 휴대전화의 개통, 변경, 조회, 해지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고 이때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프라인에서 휴대전화 가입 시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의 경우, 주민번호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개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신분증 및 주민번호가 아닌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하면 됩니다.

< 관련 사례 >

#### 통신사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 사례

- 현재는 가입신청서 작성 시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음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시행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인증하도록 변경

The diagram illustrates the change in mobile phone activation procedures. On the left, a multi-step process (01 activation, 02 real-name verification, 03 ID verification, 04 ID management, 05 activation) is shown, with the '실명확인하기' (Real-name verification) step highlighted. Below this, there are fields for '주민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 arrow points to the right, where a new '아이핀' (i-pin) login screen is shown. This screen has fields for '아이핀ID' (i-pin ID) and '비밀번호' (Secret number), and a '확인' (Confirm) button. Below the login screen are four service icons: '신규발급' (New issuance), 'ID/비밀번호찾기' (ID/Secret number search), '아이핀관리' (i-pin management), and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Q16** 통신사의 후불요금제의 경우 금융기관에 주민번호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우 거래 발생 시 이용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과 연계(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가 필요한 경우 결제 시점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17** 방송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중이며, 요금청구 및 결제 시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12.4.20)”에 따른 법률 정비 이후 제한될 예정입니다.
- 또한, 금융기관과 연계(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가 필요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18** 통신사업자의 경우 후불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미납금에 따른 채권발생 시 채권추심이나 소송을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와 같이 후불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미납금, 채권발생에 따른 추심·소송 등을 위해 최초 대면계약 시 오프라인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향후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12.4.20)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주민번호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 제 8 절 기타 주민번호 수집 · 제공

### Q20 기존에 수집한 회원들의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8월 18일부터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부칙2조에 따라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도 2년 내에(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해야 합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주민번호 수집 ·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Q21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이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주민번호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보존하고 있지 않다면 대체수단의 인증결과값을 주민번호 대신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Q22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세금신고에 위한 절차에서 이용하도록 하되, 회원가입 등 목적 외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를 갈음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사업자가 제79조의2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표시하여 기재

< 관련 사례 >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사례(예시)**

- 현재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발급 가능
- 관련 업무 발생 시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구성



## Q23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사용이 금지되며 현금영수증 발행업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입력창을 통해서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관련 조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 사례 >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사례(예시)**

- 현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시 카드번호 · 사업자번호 · 핸드폰번호 · 주민번호 중 택하여 발급하고 있음
- 발행업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입력창 또는 대체수단(카드번호 · 사업자번호 · 핸드폰번호)으로 발급하도록 변경

The image displays two side-by-side screenshots of a web-based tax receipt issuance interface, with an arrow pointing from the left to the right to indicate a transition or change in the process.

**Left Screenshot (Current State):**  
 Title: 현금영수증 발급 [온라인쇼핑몰결제] (개인 소득공제용)  
 Description: 결제하신 금액 중 세금 공제 가능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발급받은 후 3일 이내에 원천징수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현금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OSA-결제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영수증)에 의거하여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영수증)발행은 법인세법 148조 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2항에 의해 취급(세율)이 동일한 가격 및 금액에 가능합니다.  
 Section: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Options:  사업자지출증빙,  개인소득공제  
 Selections:  현금영수증카드,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Input: 현금영수증카드 [ ] - [ ] - [ ]  
 Input: 주민등록번호 [ ] - [ ] - [ ]  
 Input: 이름 [ ]  
 Note: 현금영수증 사이트(http://www.taxesave.go.kr/)에서 등록된 카드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발급한 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Button: [저장] 주안결제 후 현금영수증 정보를 회원정보에 수정 등록

**Right Screenshot (Proposed Change):**  
 Title: 현금영수증 발급 [온라인쇼핑몰결제] (개인 소득공제용)  
 Description: 결제하신 금액 중 세금 공제 가능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발급받은 후 3일 이내에 원천징수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현금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OSA-결제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영수증)에 의거하여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영수증)발행은 법인세법 148조 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2항에 의해 취급(세율)이 동일한 가격 및 금액에 가능합니다.  
 Section: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Options:  사업자지출증빙,  개인소득공제  
 Selections:  현금영수증카드,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Input: 현금영수증카드 [ ] - [ ] - [ ]  
 Input: 주민등록번호 [ ] - [ ] - [ ]  
 Input: 이름 [ ]  
 Note: 현금영수증 사이트(http://www.taxesave.go.kr/)에서 등록된 카드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발급한 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Button: [저장] 주안결제 후 현금영수증 정보를 회원정보에 수정 등록



## 제 4 장 대체수단 도입

### Q1 아이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용자는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 및 저장하지 않으므로 주민번호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이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명시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하나입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Q2 아이핀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아이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민간 본인확인기관에서 도입·발급·운영하는 민간 아이핀과 행정안전부의 공공 아이핀센터에서 도입·발급·운영하는 공공아이핀(G-PIN)으로 구분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본인확인기관에 문의하여 아이핀 도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아이핀 : NICE아이핀(2122-4615), KCB아이핀(02-708-1000), SIREN24(1577-1006)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 Q3 공인인증서는 무엇인가요?

-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금융거래 시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적 문서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수행할 때,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를 제시하고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개인정보 제공 시 주민번호가 필요하나, 향후에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 월일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관련 조항 >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③ 삭제 <2001.12.31>

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Q4 휴대폰 인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도입하나요?

- 휴대폰 인증은 이용자가 휴대전화 번호와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휴대폰 인증 서비스 업체에서 발송하는 SMS 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 휴대폰 인증의 도입 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대폰 인증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및 해당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인적사항 입력 시 주민번호가 필요하나, 향후에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Q5 아이핀 도입 시 절차나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아이핀 도입 시 인증을 위한 아이핀 모듈이 서버에 설치되며 모듈을 통한 인증결과를 DB에 저장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이 인증결과값을 중복가입 확인, 외부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 모듈 설치 시에는 기존 DB의 인덱스 설정, 참조 어플리케이션 변경 등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DB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작업이 진행됩니다.
- 또한, 아이핀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세부 절차 및 도입방법에 관해서는 본인확인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절차 및 준비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 민간아이핀 : NICE아이핀(2122-4615), KCB아이핀(02-708-1000), SIREN24(1577-1006)
  -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 Q6 연계정보(CI)는 무엇이고, 중복가입정보(MI)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연계정보(CI:Connection Information)는 아이핀 발급 시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연계정보(CI)는 이용자가 각 본인확인기관 간 아이핀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통일된 식별자가 필요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 중복가입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고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입니다.
- 중복가입정보(DI)는 동일한 이용자임에도 각 본인확인기관마다 그 값이 다를 수 있지만, 연계정보(CI)는 이용자마다 본인확인기관 간에 동일한 값으로 연동됩니다.

## **Q7** 연계정보(CI)의 활용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계정보(CI)는 아이핀을 도입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휴 사업자와의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부 식별자로서의 용도가 아닌 외부 사업자간 연계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계정보(C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 제2장(실명확인서비스의 사용), 제3장(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연계정보(CI)·중복가입정보(DI) 사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Q8** 연계정보(CI)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 연계정보(CI)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인증결과값으로 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 연계정보(C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 제2장(실명확인서비스의 사용), 제3장(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연계정보(CI)·중복가입정보(DI) 사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Q9** 게임, 쇼핑몰 등의 이용자 계정에 축적된 재산권(게임·사이버머니)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나 오프라인 등에서 강력한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불가하나, 오프라인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시행이후 제한 예정)

- 대면확인 또는 FAX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초본 및 신분증의 사본을 받아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 주민번호를 마스킹(가려서 저장) 처리하거나 확인 후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Q10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회원의 중복가입 방지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나요?**

-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생성되는 인증결과값 중 중복가입정보(DI)를 통하여 웹사이트 중복가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중복가입정보(D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 제2장(실명확인서비스의 사용), 제3장(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연계정보(CI)·중복가입정보(DI) 사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Q11 본인확인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업무(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관입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지정절차 및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Q12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와 기타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일정 기준의 심사를 거친 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기관 지정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Q13**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란 어떠한 경우  
인가요?

- 각 사업자의 해당 적용 법률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 시 주민번호를 통해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번호 사용이 가능합니다.